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3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공포, 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5분 자유발언의 발언시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,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
- 표결방법(기록표결)에 관한 사항(안 제49조)
 - 회의록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56조)
 -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(안 제63조)
 -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61조의2)
 -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(안 제61조의3)
- 나.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(안 제39조1항)

3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제54조”를 “제63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제2항”을 “법 제7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6항 중 “「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”를 “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②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0조제4항 중 “법 제15조의2제2항”을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의2제2항”을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법 제15조의2”를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1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1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제1항”을 “법 제9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5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83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은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제6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</p>	<p>제18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.

③ (생략)

제26조(조례안 예고) ① ~ ⑤ (생략)

⑥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를 따른다.

제39조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49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② ----- 법 제72조제2항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조례안 예고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-----.

제39조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

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제61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

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안자”는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으로 본다.

<신설>

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-----

제61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

① ----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-----

제61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

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

<신 설>

제63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(생략)

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1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

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3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아니하며 징계서류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